

해외 경쟁정책 동향

• 본 연합회 •

미국

DOJ와 FTC, 경쟁을 제한하는 메사추세츠 변호사 협회의 제의 거절

연방법무부(이하 DOJ)와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메사추세츠 변호사협회의 제의를 거절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만일 이 제의가 메사추세츠 대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많은 서비스 분야에서 법조인과 유사법조인 간의 경쟁이 감소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DOJ와 FTC는 이번 제의가 가격의 인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선택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DOJ의 R. Hewitt Pate 독점금지국장과 FTC의 Deborah P. Majoras 위원장이 서명한 이번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이 제안서에 따르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로 하여금 화재감시기에 대한 설명을 못하게 하거나 고객

에게 법률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고, 유사법조인으로 하여금 그 고객들에게 법적인 권리와 이슈에 관한 정보제공을 금하는 한편 중재활동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투자은행가 및 기타 재정전문가들도 그들의 고객들에게 각종 법률 관련 정보제공이 금지된다.

미국내 여러 주들에서 유사법조인들은 그러한 서비스 분야에서 법조인들과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폐해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DOJ와 FTC는 설명했다. 오히려 법조인과 유사법조인과의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이 증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OJ 독점금지국장은 “법조인과 유사법조인의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제안은 가격을 인상시키며 소비자들에게 폐해를 유발할 것으로 본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법조인들에게 의뢰를 원하지 않는 자들도 그들에게 사건 의뢰를 하여야 할 것이며, 통상 유사법조

인들에게 지불되었던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유사법조인과의 경쟁이 사라진다면 법조인들의 수수료는 더욱 인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FTC의 Majoras 위원장은 “유사법조인들의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해가 된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경쟁 그 자체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형식이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가격이 인하되고 좀 더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을 제한하자는 메사추세츠 변호사협회의 제안은 결국 그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비자 피해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메사추세츠 변호사협회는 T/F를 구성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법집행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만일 이 제안이 협회의 대표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대표위원회는 이를 메사추세츠 대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채택

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DOJ와 FTC는 이미 메사추세츠 주 하원에 유사법조인들이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고 있다.

2004. 12. 17. 연방법무부

DOJ, 버섯재배조합과의 독점금지 사건 해결

DOJ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버섯농업협동조합인 동부버섯판매조합(Eastern Mushroom Marketing Cooperative; 이하 EMMC)과 EMMC가 버섯재배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버섯재배농지를 매입하는 것을 그치고 이미 재배하고 있지 않는 농지를 경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의 화해안을 발표했다.

DOJ는 동부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에 EMMC의 공급 규제 캠페인이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셔먼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이와 함께 DOJ는 동의명령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법률상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의하면, 미국 동부에서 재배되고 있는 버섯의 약 90%를 컨트롤하고 있는 EMMC는 지난 2001년 5월에 조합원이 아닌 자들이 버섯재배농지를 매입하거나

리스하는 것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었다. EMMC의 조합원들은 버섯재배농지를 매입 또는 버섯재배만을 위한 농지로 임차하기 위해 6백만 달러 이상을 쏟아 부었다.

EMMC는 농민들의 자율적인 공동재배, 가공 및 판매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제외해 주는 Capper-Volstead법에 근거하여 조직되었다. 소장에서는 Capper-Volstead법에 따른 적용제외는 EMMC가 행한 공급 규제 캠페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Capper-Volstead법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들과의 경쟁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모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내 대표적인 버섯재배사업자 15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EMMC는 매년 5억 파운드 이상의 버섯의 공급을 관리하여 4억 달러가 넘는 이윤을 남겨왔다.

2004. 12. 16. 연방법무부

DOJ, DRAM에 대한 국제적 가격담합 적발

독일의 DRAM 제조사인 Infineon Technologies사(이하 Infineon)와 그 자회사인 Infineon Technologies North America Corporation(이하 Infineon NA)의 4명의 이사가

DRAM 시장에서 국제적인 가격담합에 참가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연방법무부는 발표했다. 이들은 각각 25만 달러의 벌금과 4개월에서 6개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될 예정이다.

DRAM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로서,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 통신기기 및 가전제품 등에 이용된다. 특히 오늘날에는 개인용 컴퓨터, 서버, 프린터, 모뎀, 휴대폰, 라우터, 디지털 카메라, TV, 셋톱박스, 게임기 및 MP3 등 우리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전자제품들에 거의 모두 장착되어 있다. 미국에서만 매년 50억 달러가 넘는 DRAM이 거래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Heinrich Florian, Gunter Hefner, Peter Schaefer와 T. Rudd Corwin은 특정 컴퓨터와 서버에 사용되는 DRAM의 가격을 고정하기로 하는 담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4명의 이사들은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시에 형사적 벌금을 물고, 향후 당국의 DRAM시장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Heinrich Florian과 Gunter Hefner는 독일 국적자로서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독일 뮌헨에 있는 Infineon에서 반도체담당 총괄 부사장과 판매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DRAM의 가격담합에 참가했다. 이들은 각각 6개월과 5개월의 징

역형과 함께 25만 달러의 형사적 벌금을 물기로 했다. Peter Schaefer 또한 독일 국적자인데, 그 역시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Infineon NA의 반도체 마케팅 및 판매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DRAM 가격고정 담합에 참가했었다. 그는 4개월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T. Rudd Corwin은 미국인으로서 1999년에서 2002년까지 Infineon NA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역시 가격고정 담합에 참가했다. 그는 4개월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행위자들이 국내에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는 관계없이 공동행위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법인에 대한 형사적 벌금을 물게 할 뿐만 아니라 사인에게 자유형을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들 4명의 이사들은 특정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DRAM 가격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등지에서 회합을 가졌고, 이 회합을 통해 DRAM 가격의 수준을 결정했으며, 이 결정된 수준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했다. 그리고 담합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해 왔다.

“이들 4명은 DRAM 시장에 대한

매우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독점금지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적발한 가격고정 담합 사건이다”고 Scott D. Hammond 형사집행부장은 말했다. 그는 “우리는 DRAM 가격고정 담합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국내 사업자는 외국 사업자는 가리지 않고 범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04년 10월에도 Infineon은 이번과 같은 담합 혐의로 1억 6천만 달러의 형사적 벌금이 선고되었던 바 있다. 이는 역대 독점금지소송 중 3번째로 많은 벌금액이었다. 또한 2004년 1월에는 Micron Technology Inc.의 지역판매책임자인 Alfred P. Censullo가 DRAM 시장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조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04. 12. 2. 연방거래위원회

E U

EU위원회, Bertelsmann과 Springer의 조인트벤처에 대해 심층심사 착수

EU위원회는 EU기업결합지침에 따라 신고된 독일의 출판사인 Bertelsmann, Gruner+Jahr 및 Springer간의 윤전 그라비아 (rotogravure) 인쇄 조인트벤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U위원회는 1차 조사를 통해 이번 기업결합이 유효경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독일내 대량 출판 잡지사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업결합이 국경을 넘어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 사건을 독일 경쟁당국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04년 11월 4일에 신고되었으며, Bertelsmann과 그 자회사인 Gruner+Jahr 및 Springer는 독일에서의 윤전 그라비아 인쇄작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영국에도 이들이 지배하는 인쇄시설을 조인트벤처로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조인트벤처는 지금껏 유럽에서 가장 큰 윤전 그라비아 인쇄시설이 될 것이다.

Bertelsmann은 TV, 라디오, 음악, 서적, 잡지, 출판 및 인쇄사업을 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회사이다. Bertelsmann은 자회사인 Maul-Belser(Arvato)와 Gruner+Jahr를 통해 윤전 그라비아 인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이 분야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큰 회사들로 알려져 있다. Axel Springer는 주로 신문이나 잡지의 출판, 인쇄 및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윤전 그라비아 기술은 잡지, 키탈로그 및 광고지와 같은 대량의 인쇄를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기술로서, 움셋 인쇄 등 여타 기술과 비교해서 신

속하고 저렴하며 고품질의 인쇄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1차 조사에서 EU위원회는, 독일 잡지에 대한 그라비아 인쇄시장은 그 범위가 독일내로 한정되는 반면에, 카탈로그와 광고지에 대한 그라비아 인쇄시장은 독일 국내 시장보다 넓은 사실을 인식했다. 독일내 잡지의 대량 인쇄시장에서, 이번 조인트벤처로 인한 결합 시장점유율은 40%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EU위원회는 심층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단계 조사에 착수한다고 하여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예단되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이번 기업결합이 유럽 역내 또는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기간은 당사자나 위원회가 원하는 경우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독일 경쟁당국인 연방카르텔청은 이번 기업결합이 독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이번 기업결합은 유럽 전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례이므로 EU위원회는 연방 카르텔청에 사건심사를 맡기지는 않기로 했다.

2004. 12. 23. EU위원회

EU위원회, Henkel사의 Sovereign 주식취득 승인

EU위원회는 EU기업결합지침에 따라 미국 회사인 Sovereign Specialty Chemicals, Inc.(이하 Sovereign)의 주식을 독일 Henkel KGaA(이하 Henkel)가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유럽내 몇몇 산업 분야에서 두 기업간 활동 범위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집중이나 EU 역내에서 유효경쟁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Henkel은 세탁세제와 주방세제, 화장품, 화장실용품, 방수제 및 접착제 등을 제조하는 독일의 대규모 회사이다. 한편 Sovereign은 특수접착제, 방수제, 코팅제 및 건축용품 등을 판매하는 미국 회사이다.

이 회사들은 유럽지역에서 책 제본이나 음식물 포장 밀봉이나 라벨링 등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접착제 관련 부문과 자동차 및 우주항공산업에서 함께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EU위원회는, 유럽에 대규모 다국적 회사들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경쟁사들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업결합이 성사되더라도 가격을 인상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해가 되는 경쟁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2004. 12. 23. EU위원회

EU위원회, EuroTel의 이동전화 사업 부문에 대한 Slovak Telecom의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EU기업결합규칙에 따라서 기존 통신사업자인 Slovak Telecom이 EuroTel Bratislava사의 이동전화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Slovak Telecom은 EuroTel의 대주주인데다가, 이미 EuroTel의 경쟁활동에 대해 상당히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중대한 경쟁제한행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EuroTel의 잔여 주식 49%를 마저 인수함으로써, Slovak Telecom은 조인트벤처 파트너였던 American West사의 지분을 모두 가져오게 되었다. American West는 미국 네트워크 사업자인 Verizon과 AT&T Wireless Services(현재의 New Cingular Wireless Services, Inc.)가 공동 출자한 회사이다.

EU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이 슬로바키아에서의 이동통신사업 및 데이터통신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고, 공동지배에서 단독지배로의 전환이 이동통신서비스 분야에서 EuroTel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lovak Telecom은 이미 EuroTel의 대주주이며 사업활동에 상당한 영

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EU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이 유럽 역내 또는 그 일부 지역에서 유효경쟁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Slovak Telekom은 Deutsche Telekom 그룹이 51%, 슬로바키아 교통부가 34%,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국립 재단이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Slovak Telekom은 슬로바키아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내 및 국제전화서비스, 무선통신서비스, 통신장비나 네트워크 판매 및 대여업을 하고 있다.

EuroTel은 슬로바키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두 개의 이동통신회사 중의 하나로서, Slovak Telekom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American West가 보유하고 있다.

2004. 12. 16. EU위원회

일본

공취위, 방위청이 발주하는 타이어·튜브의 입찰 참가업자 등에 대해 권고

공정취인위원회는 방위청이 발주하는 타이어·튜브의 입찰 참가업자 10개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제3조(부당한 거래 제한의 금지) 위반으로 권고명령을 내렸다.

방위청이 경쟁입찰에 붙인 항공기용 타이어 중 방위청 계약본부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하 특정 항공기용 타이어)의 입찰 참가자 및 입찰 대행자 4사(이하 항공기용 4사)는 적어도 2001년 7월 17일 이후, 특정 항공기용 타이어에 대해서 수주 기회를 공평하게 가지고 수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수주 예정자 등을 결정하고, 그 수주 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방위청이 발주한 특정 항공기용 타이어의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방위청이 일반경쟁 입찰에 붙인 항공기용 이외의 타이어·튜브 중 방위청 계약본부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하 특정 차량용 타이어·튜브)의 입찰 참가자 및 입찰 대행자 10개사(이하 차량용 10사)도 적어도 2003년 7월 31일 이후, 특정 차량용 타이어·튜브에 대해서 수주 기회 확보 및 수주 가격의 유지를 위해 공동으로 수주 예정자 등을 결정하여 수주 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방위청이 발주한 특정 차량용 타이어·튜브의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배제조치를 했다. 즉 항공기용 4사 및 차량용 10사는 각각 위와 같은

행위를 취소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른 사업자 및 방위청 계약본부에 통지함과 동시에, 자사의 종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사의 타이어·튜브의 판매 담당자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에 관한 연수 및 법무 담당자에 의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권고명령에 응하는 경우에는 권고와 동일한 취지의 심리판결을 실시하며, 응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수속을 개시하게 된다.

2004. 12. 24.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의 2005년도 예산 및 정원 확정

경쟁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하기 위해 2005년도 공정취인위원회의 예산 및 정원·기구가 확정되었다. 예산은 약 81억 31백만엔(전년도 대비 4.0% 증가)이며, 정원·기구에 대해서는 63명이 증원되었다.

예산과 관련하여 주요한 신규·확충 사항을 살펴보면, 신속하고 실효성이 있는 법운용에 4억 22백만엔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심사담당 직원 증원 경비와 범칙조사 관계 경비를 위한 것이다. 경쟁환경의 적극적인 창조에도 97백만엔이 책정되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독점금지법 보급·계발 활동 경비 등으로 사용된

다. 물 있는 경쟁사회의 추진 부문에도 2억 26백만엔이 책정되어, 하청법·경품표시법 담당 직원 증원 경비와 우월적지위 남용 규제 경비, 하청거래 공정화 추진 경비 등에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경쟁정책 운영 기반의 강화에 2억 94백만엔을 편성하고, 경쟁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경비와 경쟁정책 운영기반 강화 연구 경비 등으로 사용한다.

한편 63명의 정원을 증원하였는데, 심사 부문(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신속한 처리)에서 심사 전문관 56명, 하청법 운용 부문(하청법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서 하청거래 검사관 등 5명, 경품표시 감시 부문(부당표시 사건에 대한 엄정·신속한 처리)에서 경품표시 감시관 2명을 증원하였다. 반대로 업무의 합리화 등에 의해 정원 29명을 삭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2005년 말에는 총 706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괄 심의관을 신설하였으며, 범칙조사 부문에서 특별 조사부를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횡수가 증가·고도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체제로 정비하기 위해, 심판관 2명을 증설하고, 상석(上席) 심사 전문관(심판 담당)을 신설하였다.

2004. 12. 24.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일본 하이팩 주식회사에 대해 권고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본 하이팩 주식회사(이하 일본 하이팩)에 대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 제4조제1항 제3호(하청대금의 감액의 금지)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권고조치 했다.

일본 하이팩은 자신이 판매하는 골판지, 종이그릇 등을 제조하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제조를 하청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었다. 일본 하이팩은 하청대금을 지불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불해야 할 하청대금의 액수가 일정액을 넘었을 경우에 어음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하청사업자에 대해서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9월 사이에 어음 교부에 대신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였고, 어음기간에 해당하는 금리 상당분으로서 자사의 단기 조달금리 상당액을 넘는 금액을 하청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하청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청대금의 액수를 줄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는 일본 하이팩이 2003년 10월부터 2004년 9월 사이에 자사의 단기 조달금리 상당액을 넘는 금액을 하청대금에서 차감한 금액(총 1,936만 3,262엔)을 99개 하청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향후 하청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하청대금을 감액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하청사업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사내 체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그 내용을 자사의 임원 등에게 주시시키도록 조치했다.

2004. 12. 22.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유니 주식회사에 대해 권고조치

공정취인위원회는 유니 주식회사(이하 유니)에 대해 독점금지법 제19조(백화점업에 있어서의 특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 제4항 및 제6항 및 불공정한 거래방법 제14항(우월적지위의 남용) 제2호에 해당) 위반을 이유로 권고명령을 했다. 여기서 백화점업이란 매장 면적 3,000평방미터(특별구 및 정령 지정도시 이외의 시읍면의 경우에는 1,500평방미터) 이상의 점포에서 소비자가 일상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의 소매를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위반행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니는 “특별 감사 데이” 또는 “특별 초대회”라고 칭하는 세일 및 “화요일 특매”라고 칭하는 세일을 통해, 그 거래상의 지위가 자사에 비해 뒤지면서 자사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청과물의 구매 중개업자에게, 세일용으로 제공하는 청과물에 대해서 구매 중개업자가 구입하는 가격보다도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동종 상품의 일반의 도

매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고 있었다.

또한 유니는 자사 점포의 신규 오픈, 개장 오픈시의 세일 및 “특별 감사 데이” 또는 “특별 초대회”라고 칭하는 세일에서, 그 거래상의 지위와 자사에 대해서 뒤떨어지면서 자사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식료품, 의약품, 주거 관련품 등의 납품업자에 대해 자사의 판매 업무를 위한 상품의 진열, 보충, 고객이 구입한 상품의 봉투 채우기 등의 작업을 대신해 줄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왔다. 이 뿐만 아니라 유니는 자사의 재고조사를 위해서 납품업자들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아 업무를 수행시키기도 하였다.

이에 공정취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배제조치를 했다. 즉 유니는 위와 같은 행위를 취소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구매 중개업자 및 납품업자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자사의 종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도록 했다. 또한 독점금지법의 준수에 관한 행동지침을 작성하고, 해당 행동지침에 근거한 구입 담당자에 대한 독점금지법에 관한 연수 및 법무 담당자에 의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2004. 12. 9. 공정취인위원회

캐나다

공모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해 일본전국에 22만 5,000달러의 벌금

일본 기업이 경쟁당국의 심사에서 2번째로 유죄 답변을 하였다.

경쟁당국은 금일 일본전국 주식회사(NDK)는 알루미늄 생산에 사용되는 전극 블록의 가격을 고정하는 공모에 있어서의 역할에 관해 유죄의 답변을 하고, 연방법원에 의해 2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었고 고 발표했다.

「경쟁당국은 활발하게 캐나다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추적해 간다. 가격카르텔은 제품 비용을 상승시켜 캐나다 경제에 손해를 끼친다」고 경쟁국 차장보 Colette Downie씨는 언급했다.

경쟁국 심사에 의해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 NDK 대표자와 그 외의 생산자가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탄소전극 블록의 가격을 고정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당해 2년간 생산자들은 제품의 고정가격의 실시 및 유지와 가격상승에 대하여 몇 번이고 회합하였다.

NDK는 동의에 따른 형태로 무역 회사를 통해 캐나다에서 적어도 150만 달러의 전극 블록을 판매하였다. 동 일본 기업은 전극 블록 카르텔에

있어서의 역할에 관해 캐나다에서 유죄가 된 2번째 기업이다. 2004년 9월에 VAW Carbon이 연방법원에 유죄의 답변을 하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2004. 11. 9. 캐나다 경쟁국 공표문

영국

이중유리 제품의 가격카르텔에 제재금

총액 240만 파운드(감면에 의해 170만 파운드로 감액)의 제재금이 OFT에 의한 심사에 따라 절연유리(Insulated Glass) 건조제(乾燥劑) 시장에서의 가격카르텔에 대하여 부과되었다.

절연유리 건조제는 결로(結露)를 방지할 목적으로 두 장의 유리 사이의 공기부분에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이중유리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 질이다.

OFT는 영국시장으로의 주요 공급자인 UOP사가 유통업자 4사(Ukae Limited, Thermosteel Supplies Limited, Double Quick Supplyline Limited(DQS) 및 Double Glazing Supplies Group plc(DGS)와 절연유리 건조제의 가격을 고정하였다고 인정했다. OFT는 영국에서 4,000여 개 이중유리 공급자의 대부분에게 공

동으로 공급하고 있는 관계기업이 2000년 3월 1일 경쟁법 시행이래 3년 이상 질연유리 건조제의 재판매가 격 유지 및 고정 또는, 유지 또는 고정을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가격카르텔 협정은 반경쟁적 협정을 금지하는 1998년 경쟁법 제1장에 위반한다. 관계기업에게는 다음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 UOP - 154만 파운드(감면에 의해 123만 2,000파운드로 감액)
- Thermoseal - 27만 9,000파운드(감면에 의해 13만 9,000파운드로 감액)
- DQS - 10만 9,000파운드
- DGS - 22만 7,000파운드
- Ukae - 27만 8,000파운드(감면에 의해 전액 면제)

OFT의 John Vickers 의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가격을 고정하기 위한 기업간의 반경쟁적 협정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비용이 된다. 그들은 경쟁법의 심각한 위반자이며, 상당한 금액의 제재금을 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 건은 또한 정보제공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어떻게 카르텔 폭로에 기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2004. 11. 9. 영국공정경쟁청(OFT)

오 주

McMahon Services 및 그 밖의 해체작업, 석면(asbestos) 회수기업, 가격카르텔(입찰담합)로 50만 달러 이상의 벌금 지불을 요구받음

연방법원은 해체작업 및 석면 회수작업의 입찰에서 가격카르텔을 하였다고 해서 McMahon Services Pty Ltd, SA Demolition & Salvage Pty Ltd 및 DCD Enterprises Pty Ltd(D&V Services로 영업) 및 그들의 대표자들에 대해서 총액 53만 5,625달러의 벌금을 과하였다.

본 재판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2000년 후반에 국방부(Commonwealth Department of Defence)는 남호주 Salisbury에서의 프로젝트에 많은 기업을 초청하여 입찰을 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약 240만 달러의 가치가 있고, 당해 용지를 자동차제조 공업단지로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남호주 정부에 매각하기에 앞서 당해 용지의 석면 회수 및 전체 건물의 해체를 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McMahon Service와 SA Demolition은 입찰에 초대된 기업 중 2개였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 McMahon Service : 30만 달러

- Mr. Phillip Bubner(Operations Demolition Manager, McMahon Service) : 3만 5,000달러
- SA Demolition : 6만 5,625달러
- Mr. Spiros Parentes(director, SA Demolition) : 3만 5,000달러
- D&V Services : 5만 2,000달러
- Mr. Fernando D' Apollonio (director, D&V Services) 및 Mr. Vlado Turic(director, D&V Services) 양자 : 4만 8,000달러

동이에 의해 각 기업 및 개인은 법원에 확약을 제출했다. 본 확약은 석면 및 해체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것으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금지되는 것을 포함한다.

- 자사의 입찰예정가격에 관련한 어떠한 정보, 원가 또는 예산의 견적을 경쟁업자가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자사의 입찰예정가격에 관련한 어떠한 정보, 가격 또는 예산의 견적을 경쟁업자와 회합하는 것
- 경쟁업자의 입찰예정가격과 관련하여 경쟁업자에 의해 제공된 문서에 따라 행동하는 것
- 어떠한 입찰에 있어서도 의식적으로 가격의 고정 또는 가격고정의 원조(援助) 또는 교사(教唆)를 하는 것
- 가격의 고정을 목적으로 경쟁업자와 회합을 조직 또는 당해 회합에 출석 또는 참가를 하는 것

같은 형태의 확약이 개인으로부터 제출되고, 관계자 전원이 거래관행의 준수를 위한 연수 설치 및(또는) 본 연수への 참가를 약속했다.

SA Demolition, D&V Services 및 그들의 임원에 대한 벌금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얻어졌다.

ACCC의 Graeme Samuel 위원은 금일 「ACCC는 본 위반행위를 중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카르텔 행위를 추적하고, 금지시키며, 억지하는 것은 ACCC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사업자는 McMahon Services 및 Mr. Bubner에 대한 벌금 부과와 관련하여 Selway 판사가 언급한 말을 깊게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공모적 입찰담합행위는 특정 거래에 있어서의 효과가 무엇이든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행위에 참여한 자는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04. 11. 4.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공표문